▶ 문 의 :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51)

중소기업청

200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하반기 지원계획

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, 개발된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하고자 함

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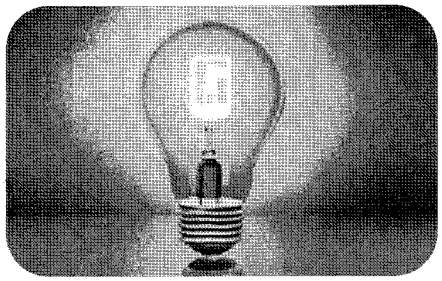

■ {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} 투자연계과제는 투자기관의 무담보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벤처캐피탈 업계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기술개발과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,

○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 받는 사업임

신청자격

※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② 벤처기업,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 ④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 투자비율이 3.0%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

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(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~33류에 해당)이거나,

○ 소프트웨어개발, 디자인 서비스, 연구개발, 환경 ·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

■ 다만, 중소제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

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

②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

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㎡ 미만인 기업

지원내용

■ 지원분야

○ 벤처캐피탈업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첨단 · 고부가가치 기술 분야 100개 과제 내외

○ 지원대상(투자연계과제 RFP) : '09. 6. 15(월)까지 홈페이지(www.smba.go.kr, www.smtech.go.kr)에 게재 예정

■ 지원규모 및 한도

○ 지원규모 : 약 75억원 내외(2009년도 지원금)

○ 지원한도

-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% 범위에서 개발기간 3년 이내, 최대 7.5억원까지 지원하고, 25% 이상은 기업부담으로 추진

※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(기업부담금의 20% 이상은 현금부담)

■ 지원조건

○ 기술성 · 사업성평가 등을 통해 투자유치 후보과제로 선정 ·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

○ 투자유형 : 신주 또는 무담보전환사채(CB) 인수

○ 투자유치 금액

- 신주 : 총 정부출연금의 50%이상

- 전환사채(CB) : 총 정부출연금의 100% 이상

○ 투자조건

- 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,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(즉, 개발기간 동안 상기 조건의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)

■ 기술료 납부

○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"성공"으로 판정될 경우,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

※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,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

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
■ 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※ 사업계획서 신청 : http://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사업계획서 내용입력

■ 신청기간 : '09. 6. 22(월) ~ 7. 15(수) 24:00까지

※ 마감일 24: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
※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

※ 과제 신청을 완료한 경우, '한국벤처캐피탈협회 R&D사업화투자협의회' 홈페이지(http://rnd.kvca.or.kr)를 통해 투자심사 요청 가능

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■ 신용조회 및 기술성 · 사업성평가 (7월)

○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산 · 학 · 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,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을 평가

※ 현장 · 경영평가는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심사로 대체

■ 최종선정 (8월)

○ 전문기관의 기술성 · 사업성평가 점수와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 추천

○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,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,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확정

■ 투자심사 및 정부출연금 지급 (8월 ~ 11월)

○ 투자심사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(R&D사업화투자협의회)에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투자적격성심사 진행

○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

- 투자심사 기간 만료 이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, 그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협약체결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계약 이행을 증빙하는 순서에 따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

문의처

	기관명	전 화	주 소
관리기관	서울지방중소기업청	02-509-6772	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(중앙동 2번지)
	부산 · 울산지방중소기업청	051-601-5150	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
	대구 · 경북지방중소기업청	053-659-2292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
	광주 · 전남지방중소기업청	062-360-9132	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
	경기지방중소기업청	031-201-6975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
	인천지방중소기업청	032-450-1153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
	대전 · 충남지방중소기업청	042-865-6135	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
	강원지방중소기업청	033-260-1631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
	충북지방중소기업청	043-230-5348	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-1
	전북지방중소기업청	063-210-6442	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1-5
	경남지방중소기업청	055-268-2551	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
	제주특별자치도	064-710-2637	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
전문기관	한국산업기술평가원	042-715-2318	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
전담기관	한국벤처캐피탈협회	02-2156-2103	서울시 서초구 법원3길 14-1 401호